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 35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정동회계법인

목 차

I.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II.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5
2. 운영성과표	7
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9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회 귀하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법인의 재무제표는 법인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법인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사항

법인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5년 2월 25일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법인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51 삼원빌딩

정 동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김 지 환



2026년 2월 23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제 35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34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유재수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충청타워 7층

(전 화) 02)363-2114

재 무 상 태 표

제 35(당)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34(전)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단위 : 원)

과 목	제 35(당) 기			제 34(전) 기		
	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자 산						
Ⅰ. 유동자산	4,265,513,387	174,566,801	4,440,080,188	4,656,273,264	148,354,550	4,804,627,814
(1) 당좌자산	4,265,513,387	148,677,054	4,414,190,441	4,656,273,264	127,449,006	4,783,722,270
현금및현금성자산	464,264,773	59,552,702	523,817,475	554,815,880	45,524,496	600,340,376
단기금융상품	3,723,444,014	-	3,723,444,014	3,991,736,676	-	3,991,736,676
외상매출금	-	61,902,180	61,902,180	-	42,377,180	42,377,180
미수금	31,187,861	1,164,842	32,352,703	34,136,771	731,850	34,868,621
미수수익	46,538,220	-	46,538,220	62,843,298	-	62,843,298
선급금	78,519	-	78,519	12,740,639	10,800,000	23,540,639
선납세금	-	26,057,330	26,057,330	-	28,015,480	28,015,480
(2) 재고자산	-	25,889,747	25,889,747	-	20,905,544	20,905,544
의약품 등	-	25,889,747	25,889,747	-	20,905,544	20,905,544
Ⅱ. 비유동자산	2,318,748,393	2,513,329,905	4,832,078,298	2,270,398,250	2,613,785,940	4,884,184,190
(1) 투자자산	1,750,535,269	86,184	1,750,621,453	1,733,228,614	7,787,382	1,741,015,996
장기성예금	1,750,535,269	86,184	1,750,621,453	1,733,228,614	7,787,382	1,741,015,996
2. 유형자산(주석4)	268,694,324	2,508,243,721	2,776,938,045	238,100,836	2,598,998,558	2,837,099,394
토지	56,682,010	408,256,091	464,938,101	56,682,010	408,256,091	464,938,101
건물	39,109,630	3,637,998,650	3,677,108,280	39,109,630	3,637,998,650	3,677,108,280
(-) 감가상각누계액	(11,732,880)	(1,607,116,086)	(1,618,848,966)	(10,755,140)	(1,516,166,120)	(1,526,921,260)
의료장치	-	182,124,000	182,124,000	-	182,124,000	182,124,000
(-) 감가상각누계액	-	(182,115,000)	(182,115,000)	-	(182,115,000)	(182,115,000)
차량운반구	447,826,757	56,975,000	504,801,757	414,642,205	56,975,000	471,617,205
(-) 감가상각누계액	(376,110,703)	(56,973,000)	(433,083,703)	(386,755,572)	(56,973,000)	(443,728,572)
비품	661,672,814	182,025,135	843,697,949	604,148,514	138,868,799	743,017,313
(-) 감가상각누계액	(554,042,395)	(153,883,669)	(707,926,064)	(488,832,052)	(131,021,156)	(619,853,208)
시설장치	81,059,340	347,811,390	428,870,730	81,059,340	335,958,390	417,017,730
(-) 감가상각누계액	(75,770,249)	(306,858,790)	(382,629,039)	(71,198,099)	(274,907,096)	(346,105,195)
(3) 기타비유동자산	299,518,800	5,000,000	304,518,800	299,068,800	7,000,000	306,068,800
임차보증금	297,302,800	5,000,000	302,302,800	296,852,800	7,000,000	303,852,800
기타보증금	60,000	-	60,000	60,000	-	60,000
전신전화가입권	2,156,000	-	2,156,000	2,156,000	-	2,156,000
자 산 총 계	6,584,261,780	2,687,896,706	9,272,158,486	6,926,671,514	2,762,140,490	9,688,812,004
부 채						
Ⅰ. 유동부채	186,344,075	90,161,964	276,506,039	187,908,703	104,517,977	292,426,680
외상매입금(주석5)	-	24,330,220	24,330,220	-	22,165,802	22,165,802
미지급금(주석5)	156,835,675	58,176,204	215,011,879	145,360,715	67,844,415	213,205,130

과 목	제 35(당) 기			제 34(전) 기		
	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예수금	29,500,400	5,647,270	35,147,670	27,761,660	11,169,040	38,930,700
부가세예수금	-	2,008,270	2,008,270	-	3,338,720	3,338,720
미지급비용	8,000	-	8,000	14,786,328	-	14,786,328
II.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186,344,075	90,161,964	276,506,039	187,908,703	104,517,977	292,426,680
순자산(주석8)						
I. 기본순자산	523,607,324	5,331,028,172	5,854,635,496	523,607,324	5,331,028,172	5,854,635,496
기본재산	200,000,000	-	200,000,000	200,000,000	-	200,000,000
보통재산	323,607,324	5,331,028,172	5,654,635,496	323,607,324	5,331,028,172	5,654,635,496
II. 보통순자산	5,874,310,381	(2,733,293,430)	3,141,016,951	6,215,155,487	(2,673,405,659)	3,541,749,828
잉여금	5,874,310,381	(2,733,293,430)	3,141,016,951	6,215,155,487	(2,673,405,659)	3,541,749,828
순 자 산 총 계	6,397,917,705	2,597,734,742	8,995,652,447	6,738,762,811	2,657,622,513	9,396,385,324
부채 및 순자산 총계	6,584,261,780	2,687,896,706	9,272,158,486	6,926,671,514	2,762,140,490	9,688,812,004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제 35(당)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34(전)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단위 : 원)

과 목	제 35(당) 기			제 34(전) 기		
	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I. 사업수익	4,352,686,446	703,582,260	5,056,268,706	4,413,380,414	745,129,396	5,158,509,810
1. 공익목적사업수익	4,352,686,446	-	4,352,686,446	4,413,380,414	-	4,413,380,414
(1) 기부금수입	4,099,938,726	-	4,099,938,726	4,179,576,414	-	4,179,576,414
(2) 보조금수익	252,747,720	-	252,747,720	233,804,000	-	233,804,000
1. 기타사업수익	-	703,582,260	703,582,260	-	745,129,396	745,129,396
(1) 광고비수익	-	1,818,182	1,818,182	-	4,545,455	4,545,455
(2) 라파의집수익	-	701,764,078	701,764,078	-	740,421,214	740,421,214
(3) 기타수익	-	-	-	-	162,727	162,727
II. 사업비용(주석11)	4,283,719,307	1,350,496,458	5,634,215,765	4,304,644,376	1,444,109,202	5,748,753,578
1. 공익목적사업비용	4,283,719,307	-	4,283,719,307	4,304,644,376	-	4,304,644,376
(1) 사업수행비용	2,683,515,568	-	2,683,515,568	2,743,900,318	-	2,743,900,318
(2) 일반관리비용	1,232,947,731	-	1,232,947,731	1,228,774,876	-	1,228,774,876
(3) 모금비용	367,256,008	-	367,256,008	331,969,182	-	331,969,182
2. 기타사업비용	-	1,350,496,458	1,350,496,458	-	1,444,109,202	1,444,109,202
III. 사업이익(손실)	68,967,139	(646,914,198)	(577,947,059)	108,736,038	(698,979,806)	(590,243,768)
IV. 사업외수익	8,024,823	758,327,074	178,953,626	15,591,206	867,275,051	216,656,965
이자수익	-	169,029,513	169,029,513	-	204,142,630	204,142,630
유형자산처분이익	-	999,000	999,000	-	1,999,000	1,999,000
투자자산처분이익	-	407,382	407,382	-	-	-
보조비수입	1,313,218	-	-	5,214,614	-	-
동행서울누리축제지원수입	700,000	-	700,000	700,000	-	700,000
지부지원수입	-	321,061,996	-	-	293,962,178	-
본부지원금	-	265,023,057	-	-	367,032,500	-
기타지원금	-	1,700,000	1,700,000	-	-	-
잡이익	6,011,605	106,126	6,117,731	9,676,592	138,743	9,815,335
V. 사업외비용	587,685,178	1,452,537	1,739,444	661,020,167	5,671,943	482,818
국고이자반납	37,578	-	37,578	10,399	-	10,399
보조비	-	1,313,218	-	-	5,214,614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406,573	406,573
라파의집지원비	586,085,053	-	-	660,994,678	-	-
잡손실	1,562,547	139,319	1,701,866	15,090	50,756	65,846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69,848,110	-	169,848,110	205,664,481	-	205,664,481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169,848,110	169,848,110	-	205,664,481	205,664,481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340,845,106)	(59,887,771)	(400,732,877)	(331,028,442)	(43,041,179)	(374,069,621)
IX. 법인세비용	-	-	-	-	-	-

과 목	제 35(당) 기			제 34(전) 기		
	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X. 당기운영이익(손실)	(340,845,106)	(59,887,771)	(400,732,877)	(331,028,442)	(43,041,179)	(374,069,62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35(당)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34(전)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회 귀하

1. 법인의 개요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법인")는 장기기증운동 등 국민 서로 간의 새 생명 나눔의 사랑 실천 운동을 통하여 국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1991년 9월 6일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가. 조 직 : 이사 11인이상 15인이하, 감사 2인

나.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사 업 (정관 제4조 (사업)):

- 1) 장기이식 필요자의 실태조사 사업
- 2) 헌혈사업에 대한 이해촉진사업
- 3) 각막기증에 대한 계도사업
- 4) 살아서 신장을 기증토록 하는 사업
- 5) 이식 가능한 장기기증에 대한 이해촉진사업
- 6) 사후 시신을 의학계에 기증토록 하는 사업
- 7)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투석사업 등 장기부전 환자를 지원하는 사업
- 8)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등록자 및 후원회원 등을 위한 수목장을 포함한 추모공원조성사업
- 9) 뇌사장기기증인(유가족 포함) 예우사업 및 장학사업등
- 10) 인체조직기증 계도사업
- 11) 기타 법인 목적에 필요한 부대사업

라. 기본재산: 일금 이억 원 (200,000,000원)

2. 중요한 회계정책

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인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1 회계단위구분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구분하여 '목적사업'부문으로 표시하고,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기타사업'부문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두 회계단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통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단위구분에 따른 내부거래가 이중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통합 결산서에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은 법인의 정관 제4조 사업에 열거된 공익목적사업부문에 해당하며, 이외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에 해당합니다.

2.2 현금및현금성자산

법인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지정기탁으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등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에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 등은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4 유가증권

① 유가증권의 분류 및 취득원가

법인은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의 단기금융상품으로, 만기가 1년 이후 도래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의 유가증권으로 각각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각후원가를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③ 유가증권에 대한 손상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금액)이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고 손상차손이 발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5 재고자산

법인의 재고자산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시가(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경우 순실현가능액, 원재료 및 저장품의 경우 현행대체원가)가 취득원가 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

하고 있습니다.

2.6 유형자산

법인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물	40년
차량운반구	5년
의료기구	5년
집기 비품/시설장치	5년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행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법인이 추정된 5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8 퇴직급여

법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 29조 제 1항에 따라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이자소득금액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한도로 장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설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10 기본순자산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자산으로서 기본재산 2억원이 있습니다.

2.11 보통순자산

보통순자산은 기본순자산이 아닌 순자산으로 지속적인 사업에 필요한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의 집합체 또는 이를 취득하기 위한 재원을 기부받은 기금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2 수익인식

법인의 사업수익은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라파의집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기부금수익

기부금수익은 기부금이 법인 또는 법인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되어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만약 기부자가 기부금을 결제하는 시점과 법인에 입금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결제 시점에 기부금수익을 인식합니다. 현물로 기부받은 물품은 기부 당시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단, 기부 당시부터 기부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보조금수익

보조금수익은 기부금과 동일하게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지급받은 보조금 중 재무상태표일 현재 반납 예정이거나 미사용 잔액은 보조금수익이 아닌 관련 부채로 계상하고, 미사용 잔액은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보조금수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수익이 아닌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라파의집수익

라파의집수익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혈액 투석이 가능한 내과 의원으로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및 식사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수입 및 의료보호수입은 관련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어 보험자 등에 대한 청구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식사판매수입은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사업비용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등에게 기부금재원을 배분하거나 장기기증 운동에 관한 연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그리고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4 법인세비용

법인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전기말 및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없습니다.

4.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계정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토지	464,938,101	-	-	-	464,938,101
건물	2,150,187,020	-	-	(91,927,706)	2,058,259,314
의료장치	9,000	-	-	-	9,000
차량운반구	27,888,633	62,667,752	(1,000)	(18,837,331)	71,718,054
비품	123,164,105	100,680,636	-	(88,072,856)	135,771,885
시설장치	70,912,535	11,853,000	-	(36,523,844)	46,241,691
합계	2,837,099,394	175,201,388	(1,000)	(235,361,737)	2,776,938,045

<전기>

(단위: 원)

계정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토지	464,938,101	-	-	-	464,938,101
건물	2,242,114,726	-	-	(91,927,706)	2,150,187,020
의료장치	9,000	-	-	-	9,000
차량운반구	24,716,917	24,121,400	(2,567,573)	(18,382,111)	27,888,633
비품	83,197,739	111,874,405	-	(71,908,039)	123,164,105
시설장치	10,095,714	69,833,940	-	(9,017,119)	70,912,535
합계	2,825,072,197	205,829,745	(2,567,573)	(191,234,975)	2,837,099,394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당기말	전기말
군산시 경장동 503-1	133.6	56,682,010	62,658,400	62,645,040
서귀포시 신흥동 506-4	3,592	389,377,791	1,036,651,200	1,044,194,400
서귀포시 신평동 505-4	181	18,878,300	45,720,600	46,046,400
합계	3,906.6	464,938,101	1,145,030,200	1,152,885,840

(3) 당기말 현재 상기의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은 568,700만원의 부보액으로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당기말 현재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주요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계정과목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상환예정금액		
			3개월 이내	3개월~1년	1년 초과
외상매입금	24,330,220	24,330,220	24,330,220	-	-
미지급금	215,011,879	44,646,485	34,222,133	10,424,352	-
합계	239,342,099	68,976,705	58,552,353	10,424,352	-

6. 퇴직급여

법인은 종업원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당기말 현재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원)

내용	당기	전기
확정기여제도 관련 비용	285,066,790	320,276,248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이미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액중 당해 연도에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범위내에서 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분(예정)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적립	169,848,110	205,664,481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169,848,110	205,664,481

8. 자본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재산은 1991년 9월 설립시 출연한 200,000,000원입니다.

9. 순자산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통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잉여금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잉여금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잉여금
전기초(2024.1.1)	5,854,635,496	3,915,819,449	523,607,324	6,546,183,929	5,331,028,172	(2,630,364,480)
당기운영이익(손실)	-	(374,069,621)	-	(331,028,442)	-	(43,041,179)
전기말(2024.12.31)	5,854,635,496	3,541,749,828	523,607,324	6,215,155,487	5,331,028,172	(2,673,405,659)
당기초(2025.1.1)	5,854,635,496	3,541,749,828	523,607,324	6,215,155,487	5,331,028,172	(2,673,405,659)
당기운영이익(손실)	-	(400,732,877)	-	(340,845,106)	-	(59,887,771)
당기말(2025.12.31)	5,854,635,496	3,141,016,951	523,607,324	5,874,310,381	5,331,028,172	(2,733,293,430)

10. 기부금

당기와 전기 중 현물기부의 시가상당액은 각각 24,250천원 및 35,782천원입니다.

11. 사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1) 당기의 사업비 및 관리비의 기능별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목적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384,371,420	2,025,293,624	-	273,850,524	2,683,515,568
장기기증홍보사업비용	26,336,500	1,808,201,467	-	273,850,524	2,108,388,491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예우사업비용	69,883,130	90,040,143	-	-	159,923,273
생존시신장등결연 사업비용	2,912,120	65,931,342	-	-	68,843,462
보조금 사업비용	134,200,000	61,120,672	-	-	195,320,672
지원비용	151,039,670	-	-	-	151,039,670
일반관리비용	-	298,309,073	343,283,892	591,354,766	1,232,947,731
모금비용	-	203,565,939	-	163,690,069	367,256,008
소계	384,371,420	2,527,168,636	343,283,892	1,028,895,359	4,283,719,307
기타사업비용	263,801,942	700,742,858	311,579,886	74,371,772	1,350,496,458
합계	648,173,362	3,227,911,494	654,863,778	1,103,267,131	5,634,215,765

(2) 전기의 사업비 및 관리비의 기능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목적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	302,647,748	2,189,897,186	-	251,355,384	2,743,900,318
장기기증홍보사업비용	-	1,974,793,803	-	251,355,384	2,226,149,187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예우사업비용	47,508,880	87,252,361	-	-	134,761,241
생존시신장등결연 사업비용	6,110,420	63,060,809	-	-	69,171,229
보조금 사업비용	180,000,000	64,790,213	-	-	244,790,213
지원비용	69,028,448	-	-	-	69,028,448
일반관리비용	-	271,887,497	338,098,954	618,788,425	1,228,774,876
모금비용	-	195,487,557	-	136,481,625	331,969,182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소계	302,647,748	2,657,272,240	338,098,954	1,006,625,434	4,304,644,376
기타사업비용	303,233,800	797,889,535	281,497,723	61,488,144	1,444,109,202
합계	605,881,548	3,455,161,775	619,596,677	1,068,113,578	5,748,753,578

1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각각 158,642천원과 170,827천원입니다.

13. 지급보증 등

당 법인은 당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058,000천원의 보증을 받아 정보보호 및 서울시 등 2개 기관에 보조금 등에 대한 반환지급보증 혹은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보조사업 관련 사항

당기 중 보조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처 및 지자체	사업내용	수행기간	예산액	전기이월분	증기(B)						감소(C)						차기이월분 (D=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자기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생명나눔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사업	2025.03.01 ~12.31	76,000,000	721	-	76,000,000	-	206	-	-	76,000,000	-	-	-	-	721	206
서울시	2025 장기(조직) 등 기준문화 활성화 사업	2025.09.01 ~12.31	50,000,000	3,862	-	50,000,000	-	51	-	50,000,000	-	-	3,862	-	-	-	51
강릉시	사랑의장기기증 홍보 및 활성화 사업	2025.01.01 ~12.31	8,000,000	418	-	8,000,000	-	645	-	8,000,000	-	-	-	-	418	-	645
경기도	장기기증운동을 통한 생명나눔 활성화 지원 사업	2025.01.01 ~12.31	30,000,000	751	-	30,000,000	-	836	-	30,000,000	-	-	-	-	-	-	1,587
경기도 성남시	함께 나누는 생명, 다시 사는 세상	2025.03.01 ~12.31	7,999,720	1,479	-	7,999,720	-	284	-	7,999,720	-	-	1,479	-	-	-	284
경상남도	장기기증 기부문화 확산 프로그램	2025.04.01 ~12.31	9,600,000	-	1,600,000	8,000,000	-	821	-	8,000,000	-	1,600,000	-	-	-	-	821
대구광역시	장기기증 활성화 지원	2025.03.01 ~12.31	9,500,000	-	-	9,500,000	-	1	-	9,500,000	-	-	-	-	-	-	1
대전	제9회 장기기증의날	2025.08.15															

부처 및 지자체	사업내용	수행기간	예산액	전기이월분	증기(B)						감소(C)						전기이월분 (D=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정행			반환			
					자기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보조금	
광역시	기념 및 초록리본 건 기대회 캠페인	~10.20	5,000,000	-	1,000,000	4,000,000	-	-	914	-	-	1,000,000	4,000,000	-	-	-	914
대전 광역시	사랑의장기증 홍보 활동	2025.03.01 ~12.31	5,048,000	-	3,848,000	1,200,000	-	-	504	-	-	3,848,000	1,200,000	-	-	-	504
부산 광역시	생명나눔 Good 도시 부산	2025.06.04 ~12.15	16,000,000	-	1,600,000	14,400,000	-	-	145	-	-	1,600,000	14,400,000	-	-	-	145
전북 군산시	9월9일 장기기증의 날 기념 제16회 희망의 한걸음 축제	2025.08.21 ~11.30	5,000,000	-	5,000,000	-	-	-	-	-	-	5,000,000	-	-	-	-	-
전북 군산시	제23회 사랑의 대 음회 "나로부터 시작 되리"	2025.02.05 ~07.21	15,070,000	-	5,070,000	10,000,000	-	-	2,255	-	-	5,070,000	10,000,000	-	1,077	-	1,178
제주특별자치 도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 활동 지원	2025.01.01 ~12.31	8,000,000	21	-	8,000,000	-	-	13	-	-	-	8,000,000	-	21	-	13
기타	장애이동 생명존중 교육교재 개발지원사업	2025.05.13 ~26.05.31	10,000,000	-	-	10,000,000	-	-	-	-	-	-	10,000,000	-	-	-	-
기타	장애이동 생명존중 교육교재 개발지원사업	2025.12.11 ~26.04.30	8,000,000	-	-	8,000,000	-	-	-	-	-	-	8,000,000	-	-	-	-

15. 재무제표의 확정

법인의 재무제표는 2026년 2월 27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